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161
		제정일자	2012. 02. 29.
	실험 · 실습실 운영 시행세칙	개정일자	2015. 04. 27.
		개정번호	1

목 차

- 제1장 산업체의 실험·실습 기기 및 시설이용
- 제2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 제3장 실험·실습실 사고 예방과 대책
- 부칙
- 별첨

작성부서	산학협력처	제정일자	2012. 02. 29.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관리처장	기획처장	행정부총장	총 장
서 명								
일 자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161

제정일자 2012. 02. 29.

개정일자 2015. 04. 27.

실험 · 실습실 운영 시행세칙

개정번호 1 페이지 2/5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161
			제정일자	2012. 02. 29.
	실험 · 실습실 운영 시행세칙		개정일자	2015. 04. 27.
			개정번호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학교시설물 사용 및 관리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라 실험·실습실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실험·실습시설물”이라 함은 학생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장비, 설비, 구조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대학교의 실험·실습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체의 실험·실습 기기 및 시설이용

제5조(산업체에서의 신청절차) 산업체에서 이 대학교의 실험·실습시설 및 기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원대학교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대학교 주관부서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심의 및 승인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다음 해당 학과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고 시설이용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신청서를 송부 받은 학과장은 7일 이내에 당해 실험·실습 담당교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해당 전공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시설이용의 적부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산업체의 장과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창업보육센터내의 실험·실습시설 및 기기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학과장은 창업보육센터장으로 본다.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161
			제정일자	2012. 02. 29.
	실험 · 실습실 운영 시행세칙		개정일자	2015. 04. 27.
			개정번호	1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손해배상) 실험·실습시설 및 기기의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도난,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는 즉시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실험 · 실습시설 및 기기의 이용에 따른 전기료, 재료비 등은 실비로 정산한다.

제9조(사용제한) 실험 · 실습시설 및 기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한다.

1.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있을 때
2. 교수의 연구에 지장이 있을 때
3. 시설관리에 장애가 있을 때
4. 단순히 부품 또는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실험 · 실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학협력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제3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제10조(안전점검) 실험·실습실 세부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반사항 안전점검
2. 실험·실습실 점검
3. 보호구 점검
4. 실험·실습실 안전장치 점검
5. 실습용구 및 기계·전기기구 점검

제11조(정밀안전진단) ① 총장은 실험·실습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험·실습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실험·실습실
3. 기타 실험·실습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안전교육 및 훈련) 총장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예방에 필요한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161	
		제정일자	2012. 02. 29.	
	실험 · 실습실 운영 시행세칙	개정일자	2015. 04. 27.	
		개정번호	1	페이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실험·실습실 사고 예방과 대책

제13조(사고조사의 목적) 사고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 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14조(사고조사의 보고) ① 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때까지 변경 및 훼손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실습의 전반을 숙지하고, 가상의 실습을 충분히 반복한다.
- ② 유해 물질 취급시 반드시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발을 감싼 신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④ 실험·실습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으며 난방용으로 전열 및 가스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습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지 제1호 서식] 동원대학교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동원대학교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서

결 재	담 당	과 장	처 장

신청 업체명			
사용 기자재 및 시설물			
사 용 일 시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동원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 회사 :

신청 자 :

(인)

동원대학교 산학협력처장 귀하

기자재 및 시설물 사용 승낙서

담 당	과 장	처 장

기자재 및 시설물명 :

사용 기간 :

귀사가 신청한 위의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